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23-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1
2023-10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안전총괄과)	29
2023-11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농업축산과)	35
2023-12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농업기술과)	4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3-9
----------	--------

제출자	거창군수
-----	------

① 제2차포원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확충 사업

1. 제안이유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하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 되는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하고 있음
 ※ 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36홀, 축구장 3면, 풋살장 2면
- 하천구역 내 이동 또는 고정 건축물 입지가 불가하여 인근 부지를 취득하여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505번지 등 7필지
- 대지면적 : 6,103㎡
- 사업내용 : 관리사무실 200㎡(사무실, 화장실 등), 주차공간 등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2년간
- 사 업 비 : 1,500백만원 정도
- 주요기능 : 제2차포원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확충 부지로 활용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7필지		6,103	107,034,100			
취득	토지	남하면 무릉리 505	답	1,244	25,128,800	2023	제2차포원 생활체육 시설 부대시설 확충	
		남하면 무릉리 504	답	127	2,565,400			
		남하면 무릉리 503	답	1,276	20,033,200			
		남하면 무릉리 502	답	506	7,944,200			
		남하면 무릉리 501	답	1,043	22,320,200			
		남하면 무릉리 501-1	답	1,159	18,196,300			
		남하면 무릉리 496	답	748	10,846,000			

※ 기준가격은 최근 공시지가 기준가격임(본 감정평가 시 변동가능성 있음)

다. 추진경과

- 2021. 6. : 하천환경정비사업 부지 체육시설 활용 건의(군수)
- 2021.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2. 10. : 하천기본계획 변경(복원→친수)

라. 향후계획

- 2023. 1. :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수행
- 2023. 2. : 파크골프장 하천점용허가 및 위·수탁 협약
- 2023. 5. : 편입부지 보상 협의
- 2023. 6. : 실시설계 용역
- 2023. 10. :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수행
- 2024. 1. : 사업 착공
- 2024. 12. : 사업 완료

마. 기대효과

-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이용자 및 각종 대회 참여자들의 편의 증진
- 군민 여가 및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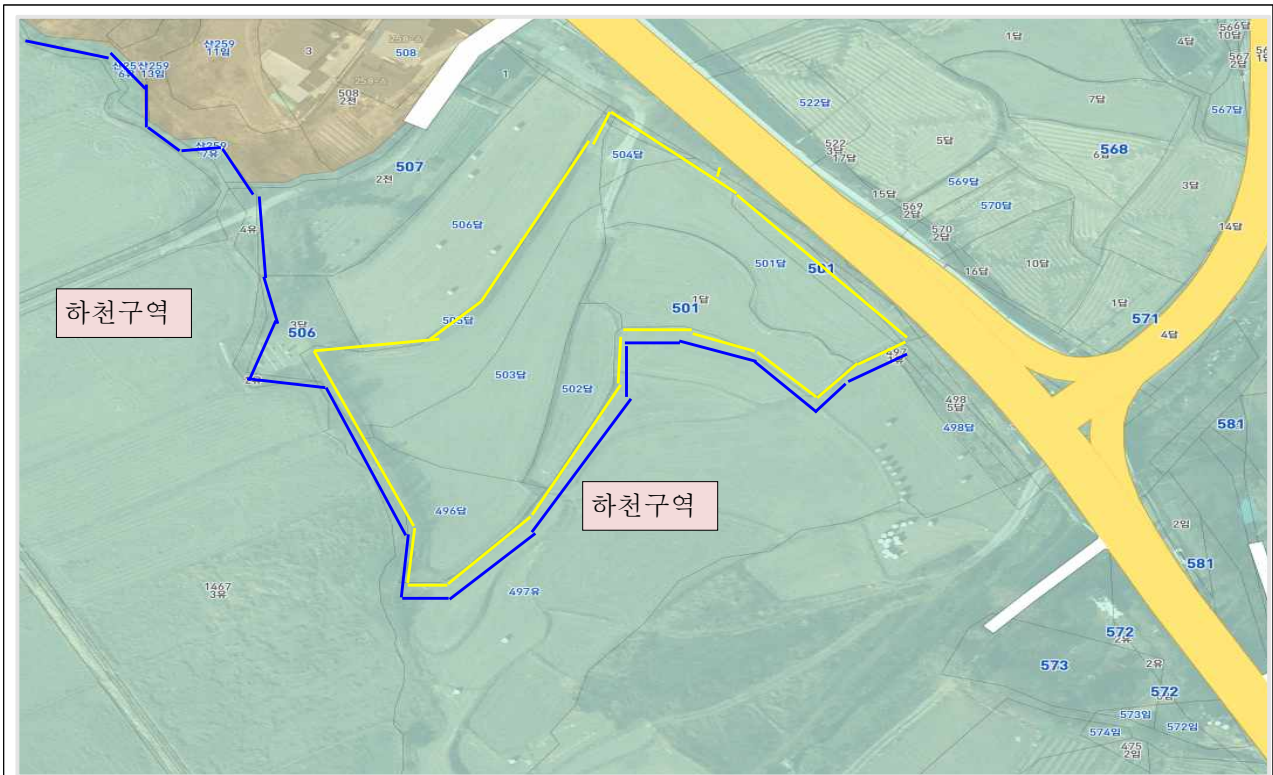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 : 남하면 무릉리 505번지 등 7필지



위 치 상 세

②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 사업 변경

1. 제안이유

-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과 감악산 산림관광 지구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내용 변경에 따른 취득 계획 변경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17번지 외 12필지
- 대지면적 : 746,087㎡정도(1,844,438㎡→ 746,087㎡)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2년간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3,500 지방비3,500)
- 내 용 : 감악산 산림휴양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산림 치유의 숲(80ha), 숲속야영장(25ha) 조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746,087	307,806			
취득	토지	신원면 덕산리 산13-1	임야	68,838	43,368	2023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	
		신원면 덕산리 산13-14	임야	1,920	1,267			
		신원면 덕산리 산13-15	임야	27,075	17,328			
		신원면 덕산리 산13-16	임야	1,767	1,166			
		신원면 덕산리 산13-18	임야	128,659	59,183			
		신원면 과정리 산150	임야	277,040	99,734			
		신원면 과정리 산150-1	임야	14,823	5,485			
		신원면 과정리 산150-2	임야	600	222			
		신원면 과정리 산153	임야	595	220			
		신원면 과정리 산154	임야	46,909	16,418			
		신원면 과정리 산159	임야	39,967	14,788			
		신원면 과정리 산161	임야	36,340	13,082			
		신원면 과정리 산132	임야	101,554	35,544			

다. 추진경과

- 2021. 12. : 감악산 및 주요명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행
- 2022. 11. : 감악산 및 주요명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준공
- 2022. 11. : 2022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월안통과)

라. 향후계획

- 2023. 1. :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 타당성 용역 시행
- 2023. 1. : 감정평가 등 매입 전 사전절차 이행
- 2023. 3. ~ 6. : 토지 매입

마. 기대효과

- 마스터플랜의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로 감악산 관광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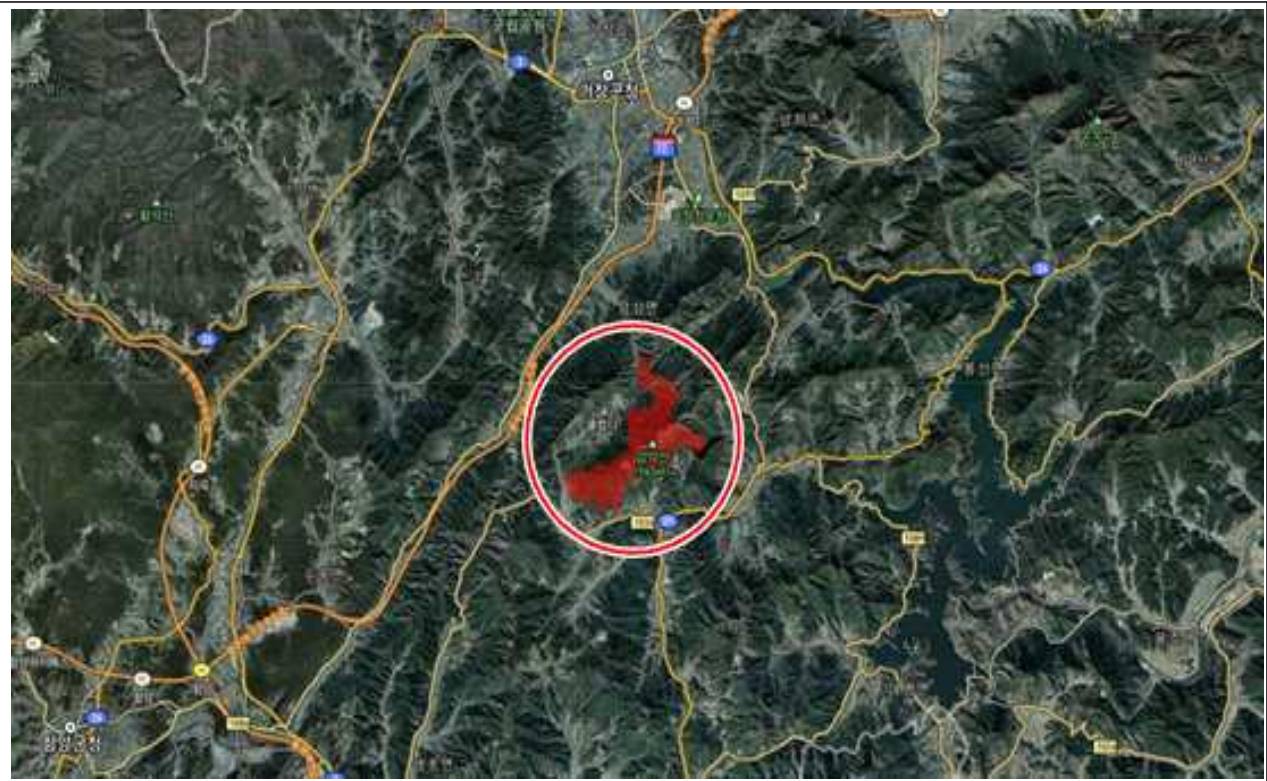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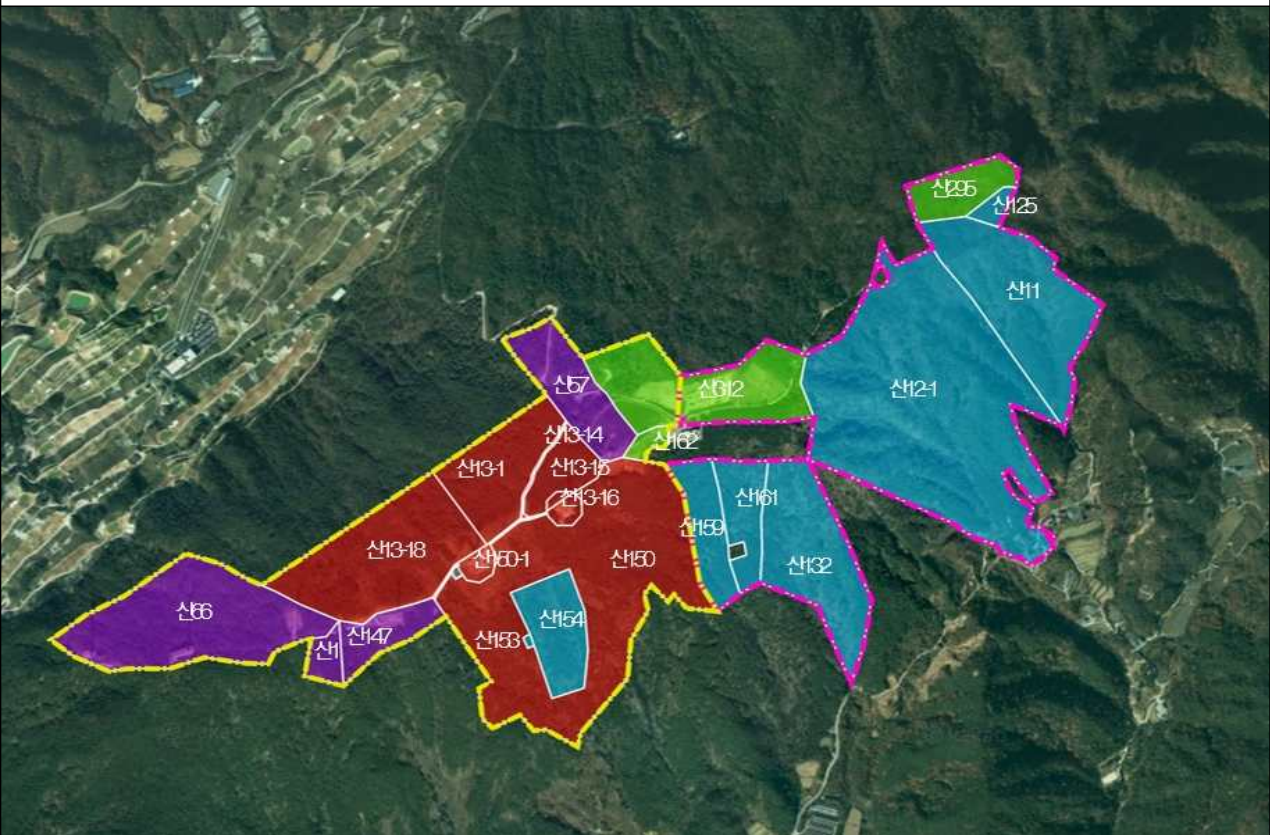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 : 신원면 덕산리 산13-1 등 13필지



지구조성 계획(안)

③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편입부지 및 지장물건 매입)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3차 지구”로 선정된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방치된 축사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소와 유해물질의 취수원 유입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 지역민의 삶 건강권 확보 목적을 위해 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건(폐축사 등) 매입하여 녹지공간 조성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2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10. ~ 2026. 12. / 5년간
- 사업내용 : 폐축사 철거 및 동산마을 환경개선
(친환경 경관농업단지 조성, 치유마을 조성 등)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 (국 12,500, 도 3,750, 군 8,750)

(단위:백만원)

구분	계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5%)	4년차 (25%)	5년차 (25%)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5,000	2,500	3,750	6,250	6,250	6,250	
국 (50%)	12,500	1,250.0	1,875.0	3,125.0	3,125.0	3,125.0	
도 (15%)	3,750	375.0	562.5	937.5	937.5	937.5	
군 (35%)	8,750	875.0	1,312.5	2,187.5	2,187.5	2,187.5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붙임참조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1)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재지	면적(m ²)				
계				7,287,133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18번지 등 52필지	48,816	2,457,926	2023 ~ 2024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	
	지장 건물	축사 84동 및 창고 33동 등 지장건물 36동	21,256	4,829,207	2023 ~ 2024	사업부지 편입	

※ 1)기준가격 적용 : 토 지 → 현.기준 공시지가
지장건물 → 가감정 결과

다. 추진경과

- 2022. 8. : 2022년 경남도 투자심사(재정영향평가) 완료
- 2022. 10. : 2022년 농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선정
- 2023. 2. : 지장물건 편입조서 및 물건도 작성용역 완료
- 2023. 2. :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 공고

라. 향후계획

- 2023. 2. ~ 3. : 농식품부 사업구역 조정·협의 → 확정
- 2023. 4. : 편입물건 보상협의 착수
 - ※ 농식품부 협의결과에 의거 착수시기 유동적
- 2023. 3. ~ 10. :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및 농식품부 승인
- 2023. 11. ~ 2024. 6. :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농식품부 승인
- 2024. 7. ~ 2026. 12. : 공사 착공 및 준공(장기계속공사)

마. 기대효과

- 페슬레이트 축사 정비를 통한 쾌적한 녹지경관 공관 조성
- 거창군 향노화웰니스산업 연계 녹색샬터 조성
- 농촌협약 LINK조직 연계 생태경관 학습기반 확대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지적현황, 현장전경 : 붙임참조

[붙임1] 편입토지 조서

연 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적용)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48,816	2,457,926,300	
1	거창읍	대동리	518	전	631	18,551,400	2023~2024
2	거창읍	대동리	519	답	2,837	109,791,900	
3	거창읍	대동리	527	답	2,307	111,889,500	
4	거창읍	대동리	529-6	대	142	16,756,000	
5	거창읍	대동리	530-56	대	253	27,577,000	
6	거창읍	대동리	528-8	답	687	74,883,000	
7	거창읍	대동리	528	답	771	30,146,100	
8	거창읍	대동리	528-7	답	632	68,888,000	
9	거창읍	대동리	529-4	대	210	22,785,000	
10	거창읍	대동리	530-57	대	399	43,291,500	
11	거창읍	대동리	528-10	답	795	86,257,500	
12	거창읍	대동리	528-5	답	1,250	132,500,000	
13	거창읍	대동리	530-35	전	2,786	63,242,200	
14	거창읍	대동리	530-34	전	538	28,729,200	
15	거창읍	대동리	529-5	대	314	34,226,000	
16	거창읍	대동리	530-24	전	614	58,821,200	
17	거창읍	대동리	520-2	답	2,479	95,937,300	
18	거창읍	대동리	522-2	답	553	21,401,100	
19	거창읍	대동리	522	답	2,056	79,567,200	
20	거창읍	대동리	523	답	5,044	195,202,800	
21	거창읍	대동리	528-2	답	547	59,623,000	
22	거창읍	대동리	528-3	답	589	64,790,000	
23	거창읍	대동리	528-11	답	235	24,910,000	
24	거창읍	대동리	528-1	답	266	25,482,800	
25	거창읍	대동리	528-4	답	291	32,010,000	
26	거창읍	대동리	528-6	답	486	51,516,000	
27	거창읍	대동리	529-3	대	145	17,110,000	
28	거창읍	대동리	530-11	전	245	10,486,000	
29	거창읍	대동리	530-7	전	496	19,691,200	

연 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적용)	취득 시기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²)			
30	거창읍	대동리	530-17	전	1,618	38,023,000		
31	거창읍	대동리	530-47	전	2,553	79,143,000		
32	거창읍	대동리	526	답	2,314	89,089,000		
33	거창읍	대동리	522-1	목장 용지	1,805	71,297,500		
34	거창읍	대동리	521	창고 용지	496	12,747,200		
35	거창읍	대동리	532-1	창고 용지	625	74,375,000		
36	거창읍	대동리	532-3	전	800	75,840,000		
37	거창읍	대동리	530-54	전	170	16,286,000		
38	거창읍	대동리	324-1	전	69	6,417,000		
39	거창읍	대동리	324-2	대	450	47,250,000		
40	거창읍	대동리	530-62	대	110	12,100,000		
41	거창읍	대동리	530-53	전	118	10,856,000		
42	거창읍	대동리	530-33	대	164	19,188,000		
43	거창읍	대동리	530-48	전	324	14,968,800		
44	거창읍	대동리	528-9	답	96	10,560,000		
45	거창읍	대동리	529	대	134	5,239,400		
46	거창읍	대동리	산38-6	임야	660	25,806,000		
47	거창읍	대동리	산77	구거	1,625	100,425,000		
48	거창읍	대동리	970	구거	3,226	42,260,600		
49	거창읍	대동리	971	구거	298	11,651,800		
50	거창읍	대동리	972	도로	1,759	23,042,900		
51	거창읍	대동리	530-52	전	178	16,376,000		
52	거창읍	대동리	530-23	전	626	28,921,200		

[붙임2] 편입 지장물건 조서

연 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 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단위			
	계		21,256		㎡	4,829,207,540		
1	거창읍	대동리	518 519	퇴비사	93	㎡	11,160,000	2023~2024
2	거창읍	대동리	518 519	퇴비사	80	㎡	9,600,000	
3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104	㎡	28,080,000	
4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248	㎡	66,960,000	
5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27.3 6	㎡	7,387,200	
6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380	㎡	102,600,000	
7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74.8	㎡	17,503,200	
8	거창읍	대동리	518 519	축사	258. 4	㎡	69,768,000	
9	거창읍	대동리	518 519	퇴비사	88.4	㎡	10,608,000	
10	거창읍	대동리	520-2 522-2	퇴비사	352	㎡	45,408,000	
11	거창읍	대동리	520-2 522-2	축사	308	㎡	74,844,000	
12	거창읍	대동리	522	축사	311.6	㎡	84,132,000	
13	거창읍	대동리	522	퇴비사	210	㎡	27,090,000	
14	거창읍	대동리	522	창고	22.1	㎡	3,978,000	
15	거창읍	대동리	522	축사	243	㎡	65,610,000	
16	거창읍	대동리	522	창고	12.5	㎡	2,250,000	
17	거창읍	대동리	522	화장실	2.25	㎡	1,200,000	
18	거창읍	대동리	522	창고	63	㎡	11,340,000	
19	거창읍	대동리	521	저온 창고	108	㎡	68,040,000	
20	거창읍	대동리	521	가추	132	㎡	12,540,000	
21	거창읍	대동리	521	바닥	120	㎡	2,400,000	

연 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 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22	거창읍	대동리	530-34	축사	117	㎡	28,431,000	
23	거창읍	대동리	530-34	창고	4	㎡	972,000	
24	거창읍	대동리	530-34	축사 (창고)	55	㎡	13,365,000	
25	거창읍	대동리	530-34	창고	7	㎡	1,701,000	
26	거창읍	대동리	530-35	축사	259	㎡	62,937,000	
27	거창읍	대동리	530-35	가추	45	㎡	3,600,000	
28	거창읍	대동리	530-35	퇴비사	264	㎡	36,696,000	
29	거창읍	대동리	530-35	축사	368.6	㎡	89,569,800	
30	거창읍	대동리	522-1	축사	695.4	㎡	187,758,000	
31	거창읍	대동리	522-1	작업장	132	㎡	39,204,000	
32	거창읍	대동리	522-1	관리사	264	㎡	102,168,000	
33	거창읍	대동리	530-17	축사	296.4	㎡	80,028,000	
34	거창읍	대동리	530-17	축사 (완파)	304	㎡	3,040,000	
35	거창읍	대동리	530-17	퇴비사	120	㎡	14,400,000	
36	거창읍	대동리	530-17	퇴비사	161	㎡	19,320,000	
37	거창읍	대동리	530-17	퇴비사	40	㎡	4,800,000	
38	거창읍	대동리	530-47	축사	144.4	㎡	38,988,000	
39	거창읍	대동리	530-47	축사	144.4	㎡	38,988,000	
40	거창읍	대동리	530-47	축사	140.6	㎡	37,962,000	
41	거창읍	대동리	530-47	창고	225.9	㎡	52,860,600	
42	거창읍	대동리	530-47	화장실	5	㎡	1,500,000	
43	거창읍	대동리	530-48	축사	33	㎡	7,425,000	
44	거창읍	대동리	530-48	창고	10	㎡	2,250,000	
45	거창읍	대동리	530-48	창고	72.3	㎡	16,267,500	

연 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 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46	거창읍	대동리	530-48	창고	7.5	㎡	1,687,500	
47	거창읍	대동리	530-48	축사	15	㎡	3,375,000	
48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창고	84	㎡	18,144,000	
49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가추	24	㎡	1,440,000	
50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축사	110	㎡	29,700,000	
51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축사	114	㎡	30,780,000	
52	거창읍	대동리	530-7 530-11	창고	7.5	㎡	1,350,000	
53	거창읍	대동리	530-24	축사	32	㎡	7,776,000	
54	거창읍	대동리	530-24	축사	72.6	㎡	17,641,800	
55	거창읍	대동리	530-24	축사	88	㎡	21,384,000	
56	거창읍	대동리	530-24	가추	24	㎡	1,920,000	
57	거창읍	대동리	530-24	창고	22	㎡	3,960,000	
58	거창읍	대동리	530-24	창고	17	㎡	3,060,000	
59	거창읍	대동리	523	축사	912	㎡	287,280,000	
60	거창읍	대동리	523	물 탱크실	4.5	㎡	598,500	
61	거창읍	대동리	523	축사	585.2	㎡	158,004,000	
62	거창읍	대동리	523	창고	40	㎡	7,200,000	
63	거창읍	대동리	523	축사	14	㎡	2,520,000	
64	거창읍	대동리	523	창고	10.5	㎡	1,890,000	
65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260	㎡	63,180,000	
66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320.5	㎡	77,881,500	
67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퇴비사	236.8	㎡	30,547,200	
68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156	㎡	42,120,000	
69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156	㎡	42,120,000	

연 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 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70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축사	156	㎡	42,120,000	
71	거창읍	대동리	523 산21-4	창고	3.6	㎡	478,800	
72	거창읍	대동리	526	주택 등	49.4	㎡	20,007,000	
73	거창읍	대동리	526	보일러 실	2.5	㎡	285,000	
74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190	㎡	51,300,000	
75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243.2	㎡	65,664,000	
76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319.2	㎡	86,184,000	
77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349.6	㎡	94,392,000	
78	거창읍	대동리	526	축사	288.8	㎡	77,976,000	
79	거창읍	대동리	526	퇴비사	153	㎡	19,737,000	
80	거창읍	대동리	526	퇴비사	243.2	㎡	31,372,800	
81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304	㎡	82,080,000	
82	거창읍	대동리	527	가추 (창고)	156	㎡	14,820,000	
83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273.6	㎡	73,872,000	
84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281.2	㎡	75,924,000	
85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286	㎡	77,220,000	
86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190	㎡	51,300,000	
87	거창읍	대동리	527	가추	3.6	㎡	288,000	
88	거창읍	대동리	527	축사	197.6	㎡	53,352,000	
89	거창읍	대동리	528-1	축사	57.2	㎡	13,899,600	
90	거창읍	대동리	528-1	축사	144	㎡	34,992,000	
91	거창읍	대동리	528-2 528-3	축사 (반파)	248.4	㎡	23,598,000	
92	거창읍	대동리	528-2 528-3	축사 (반파)	96	㎡	9,120,000	
93	거창읍	대동리	528-2 528-3	축사	72	㎡	17,496,000	
94	거창읍	대동리	528-2 528-3	퇴비사	120	㎡	14,400,000	
95	거창읍	대동리	528-4	축사	190	㎡	51,300,000	
96	거창읍	대동리	528-5	창고	16	㎡	3,600,000	

연 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 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97	거창읍	대동리	528-5	축사	190	㎡	46,170,000	
98	거창읍	대동리	528-5	창고	1.5	㎡	186,000	
99	거창읍	대동리	528-5	퇴비사	184	㎡	22,080,000	
100	거창읍	대동리	528-5	축사	167.2	㎡	40,629,600	
101	거창읍	대동리	528-5	계근대 및 창고	45.6	㎡	6,064,800	
102	거창읍	대동리	528-5	창고	6.5	㎡	806,000	
103	거창읍	대동리	528-5	축사	197.6	㎡	48,016,800	
104	거창읍	대동리	528-7	퇴비사	92.4	㎡	11,088,000	
105	거창읍	대동리	528-7	축사 (반파)	124.8	㎡	11,856,000	
106	거창읍	대동리	528-7	퇴비사	83.6	㎡	10,032,000	
107	거창읍	대동리	528-9	축사	66	㎡	16,038,000	
108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퇴비사	74.4	㎡	8,928,000	
109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축사	111.7	㎡	27,147,960	
110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축사	182.2	㎡	44,284,320	
111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축사	141.3	㎡	34,350,480	
112	거창읍	대동리	528-6 528-11 529-3	축사 (반파)	125.4	㎡	11,913,000	
113	거창읍	대동리	971외	축사	147	㎡	31,752,000	
114	거창읍	대동리	529-5	축사	129.5	㎡	34,965,000	
115	거창읍	대동리	529-6	축사	133	㎡	35,910,000	

연 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 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116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퇴비사	78.3	㎡	9,396,000	
117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112.2	㎡	27,264,600	
118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반파)	180	㎡	17,100,000	
119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창고	7.2	㎡	1,296,000	
120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반파)	96	㎡	9,120,000	
121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퇴비사	72	㎡	8,640,000	
122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45	㎡	10,935,000	
123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반파)	45	㎡	4,275,000	
124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90	㎡	21,870,000	
125	거창읍	대동리	528-10 529-4 530-57	축사	140	㎡	34,020,000	
126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축사	221	㎡	53,703,000	
127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축사	197.1	㎡	47,895,300	
128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창고	158.4	㎡	20,433,600	
129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창고	72.8	㎡	9,391,200	
130	거창읍	대동리	528-8 530-53 530-56	축사 (반파)	51.84	㎡	4,924,800	
131	거창읍	대동리	530-52	창고 (반파)	60	㎡	6,840,000	
132	거창읍	대동리	530-54	창고	104.28	㎡	22,524,480	

연 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원) (가감정액)	취득 시기	비 고
	소재지			종류	수량 및 면적			
133	거창읍	대동리	530-33	축사	77	㎡	17,325,000	
134	거창읍	대동리	324-1 324-2	축사	347.8	㎡	93,906,000	
135	거창읍	대동리	324-1 324-2	가추 (창고)	18	㎡	1,440,000	
136	거창읍	대동리	324-1 324-2	축사	69.3	㎡	16,839,900	
137	거창읍	대동리	324-1 324-2	퇴비사	111	㎡	14,319,000	
138	거창읍	대동리	532-1	창고	187	㎡	52,173,000	
139	거창읍	대동리	532-1	가추	65	㎡	4,550,000	
140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124.8	㎡	30,326,400	
141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방 및 창고	82.8	㎡	26,082,000	
142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가추	17.5	㎡	1,400,000	
143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64	㎡	15,552,000	
144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155.4	㎡	41,958,000	
145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185	㎡	49,950,000	
146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축사	185	㎡	49,950,000	
147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퇴비사	115.2	㎡	14,860,800	
148	거창읍	대동리	532-1 532-3	가추 (창고)	36	㎡	3,420,000	
149	거창읍	대동리	530-2 3	축사	175.5	㎡	42,646,500	
150	거창읍	대동리	530-2 3	축사	97	㎡	23,571,000	
151	거창읍	대동리	530-2 3	화장실	2.24	㎡	1,400,000	
152	거창읍	대동리	530-2 3	축사	108	㎡	26,244,000	
153	거창읍	대동리	530-2 3	창고 (반파)	4	㎡	380,000	

[붙임3] 위도 및 지적현황, 현장전경





4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1.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 소관「¹⁾주거플랫폼 구축사업」공모 선정
 - 구.거창중학교 ¹⁾신원분교(폐교) 부지 일부를 활용,
 - ① 어울림센터·숲 도서관 신축 : 주민 소통 및 문화공간 조성
 - ② 체육관 리모델링 : 지역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공

※ ¹⁾주거플랫폼 구축사업

- 추진방향 : 농촌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생활SOC+일자리'를 연계하여 공급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 위치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253-5번지 (구.신원분교)
- 사업기간 : 2022. ~ 2024.
- 사업내용 : 어울림센터·숲 도서관 신축(1층, A=469㎡),
기존 체육관 리모델링(1층, A=295㎡)
- 총사업비 : 2,800백만원(균특 100%)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800		200	시행계획	2,040		560	
균특	센터 신축	2,800	기본계획	200	수립.고시	2,040	공사 준공	560	
도비	-	-	수립 및	-	공사	-		-	
군비	체육관 리모델링	-	실시설계	-	착공	-		-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 취득내용

- 어울림센터·숲 도서관 신축 1동 (1층, 건축면적 469㎡)
- 기존 체육관 리모델링 1동 (1층, 건축면적 295㎡)

○ 세부 시설내역 및 소요예산

- 어울림센터·숲 도서관(신축) : 1,725백만원(3.7백만원/㎡ 적용)

층별	세부시설	건축면적(㎡)	용도
계		469.0	주민 소통 및 문화공간 조성
1층	다목적홀	144.0	동아리 활동 및 영화관, 행사공간
	숲속 도서관	40.3	도서관
	카페/휴게실	64.0	휴게공간
	화장실, 샤워실	74.9	이용편의시설
	복도 등 기타	145.8	부대시설

- 체육관(리모델링) : 810백만원(2.7백만원/㎡ 적용)

층별	세부시설	건축면적(㎡)	용도
1층	체 육 관	295	체육 및 동아리 활동, 행사공간

다. 추진경과

- 2021. 8. : 2021년 국토교통부 “주거플랫폼 구축사업”공모선정
- 2022. 2.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사업부지 용도변경)

< 당 초 >

연번	소재지	면적(㎡)	용도	비고
1	과정리 253 구.신원중	12,756	노인 요양 시설 신축	행복 나눔과

분할
→

< 변 경 >

연번	소재지	면적(㎡)	용도	비고
1	과정리 253	10,627	노인 요양시설 신축	행복 나눔과
2	과정리 253-5	2,129	주거 플랫폼 구축	미래 전략과

- 2022. 6. :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안) 주민의견 수렴
- 2022. 8. :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2. : 주민설명회 개최 -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

라. 향후계획

- 2023. 4. :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23. 4. ~ 5. :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사업 승인·고시
- 2022. 6. ~ 2024.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지역소멸 위기의 면지역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
- 지역민 문화·체육 복지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지역민 간 화합의 공간 제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건축계획도 : 붙임 참조

[붙임1] 위치도 및 건축계획도

□ 위치도 (사업계획도)



□ 건축계획도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몰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2023-1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사유

- 원학골 주민의 안전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원거리 사각지대 주민의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 경상남도(거창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포함되는 공유지(위천면 장기리 509번지, 1,633㎡)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대하여 거창군의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 공유재산 현황

재산 종별	소재지	소유자	지 목	면 적	공시지가	비 고
토지	위천면 장기리 509	거창군	대	1,633㎡	60,200원 (2022년)	

- 영구시설물 축조 주체 : 경상남도(거창소방서)
 - 축조목적 : 위천119안전센터 증축
 - 존치기간 : 영구
-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
 - 합 의 자 : 경상남도지사(거창소방서) ⇔ 거창군수

3. 사업계획

- 증축규모 : 191.42㎡ / 지상 2층(1동) / 철근콘크리트조
- 사업비 : 금1,487,846천원(도비)

4. 심의사항

- 거창군 소유 공유재산 토지(위천면 장기리 509)에
- 경상남도(거창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여부

5. 참고사항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 사용료의 감면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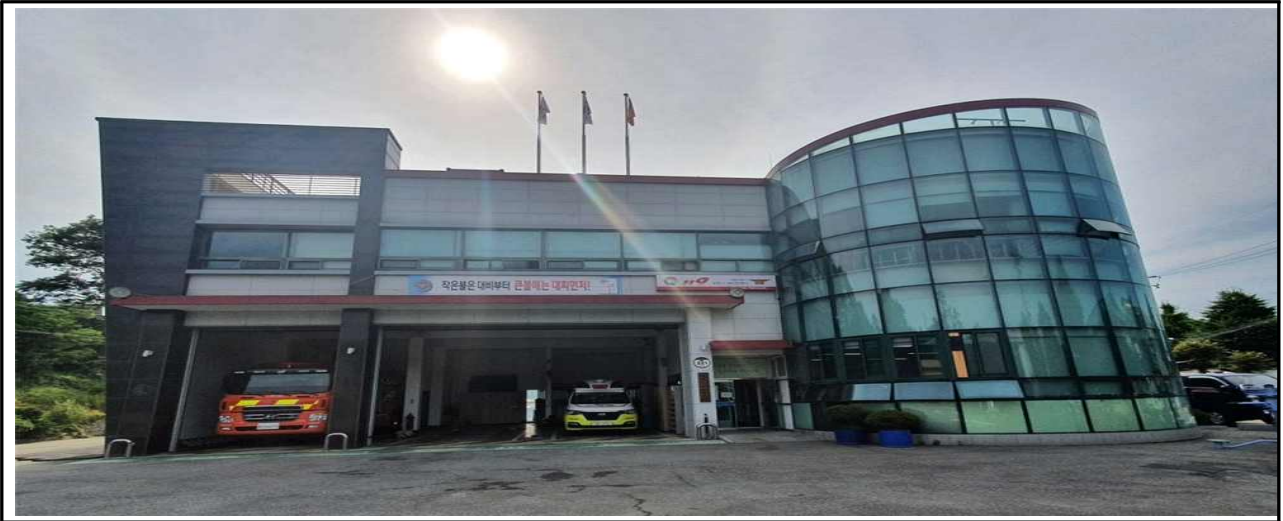
6. 추진일정

- 거창군의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 2023. 3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2023. 3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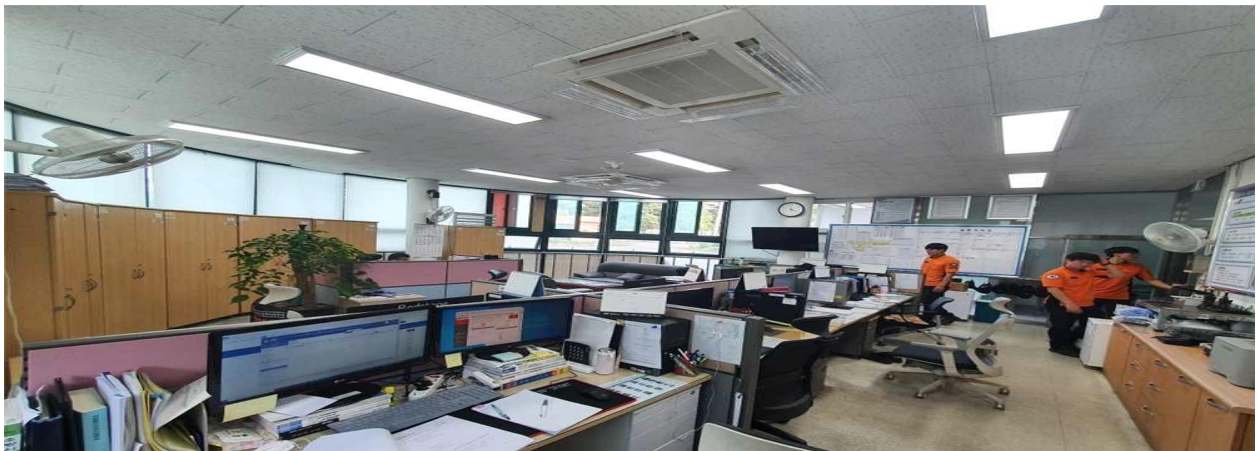
- 붙임 1. 위천119안전센터 전경 및 위치도 1부.
2.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 1부.
3. 관련법령 1부.

위천119안전센터

▣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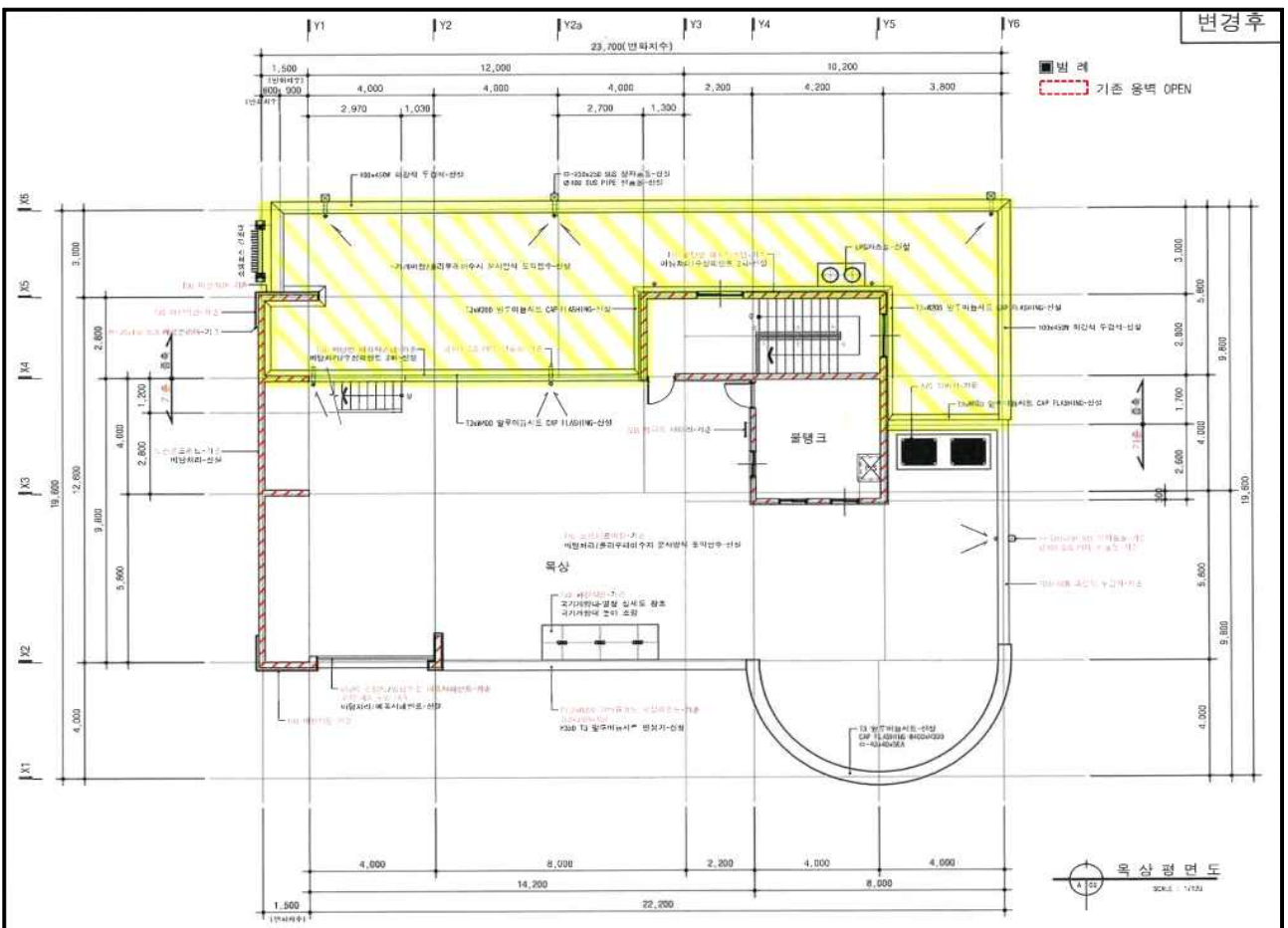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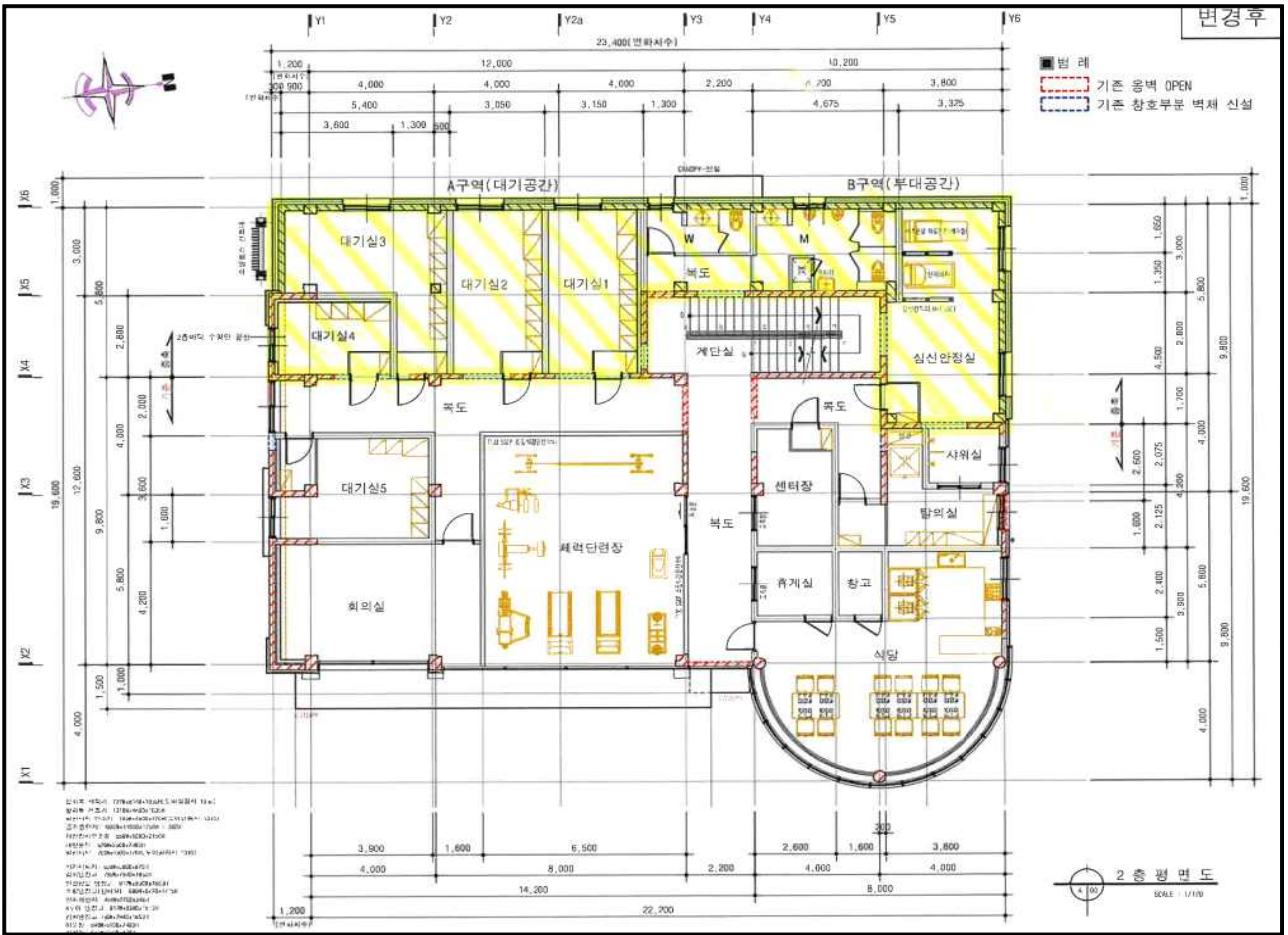
외부전경



내부(사무실)

▣ 건물위치 :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1번지(장거리 509)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2.
- 3.
- .
- .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1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사유

- 거창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탁자 재선정

2. 주요내용

가. 현 황

- 시설명 :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 위치 : 경남 거창군 · 읍 거합대로 3390
- 규모
 - 건물 : 163.38㎡
 - 대지 : 3,013㎡

나. 위탁사무

- 시설운영 : 축산종합방역소 세척 · 소독시설 유지 및 관리
- 기타사항 : 그밖에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다. 그간 추진사항

- 2019. 7. 25. : 축산종합방역소 건축공사 준공
- 2019. 11. 27.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
- 2019. 12. 24. : 축산종합방역소 부대공사 준공
- 2020. 2. 1. :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 2020. 4. 27. :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공모
- 2020. 7. 1. ~ 2023. 6. 30. :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운영
- 2023. 2. 14. : 민간위탁사무 업무성과 평가 완료 및 결과 공고
- 2023. 2. 15. : 민간 재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라. 운영계획

- 수탁자 : 거창군축산업협동조합
- 위탁기간 : 2023. 7. ~ 2028. 6.(5년 간)
- 위탁범위
 - 축산종합방역소 시설물 유지·관리
 - 기타 축산종합방역소 관리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사항

마. 소요예산

- 연간 36,000천원 정도(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제외)
 - 인건비 : 월 2,580천원 × 12개월 = 30,960천원
 - 기 타 : 보험료, 퇴직급여 등 = 5,040천원
- ※ 운영 위탁금은 운영방법(특별방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지난 3년간 운영 내역 반영 후 위탁금 조정 함

3. 참고사항

가. 향후계획

- 2023. 5. : 민간위탁 갱신 신청(축협 → 군)
- 2023. 6. :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재협약(재위탁) 및 계약

나.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

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향전부개정 2014.10.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2022.11.3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10.0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2014.10.01)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2014.10.01)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호신설 2014.10.0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호이동 2014.10.0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는 재난형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상시방역기구로서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이하 “방역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방역소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90에 둔다.

제3조(시설) 방역소의 시설은 소독기, 세척기, 자재 보관창고, 사무공간, 그 밖에 방역소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방역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중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확인증 발급. 다만, 평시방역기간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2.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이동경로 및 정보수집

3. 그 밖에 방역소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기간·시간) ① 방역소 운영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특별방역기간

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나.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평시방역기간

가. 특별방역기간을 제외한 3월부터 9월까지

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특별방역기간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③ 경계단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소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방역소에는 상주인력 1명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계단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인력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역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역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9.11.27. 조례 제2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1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요구내용

-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함.
- 근 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2. 주요내용

가. 현 황

- 위탁시설 :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 69.2㎡
- 위 치 : 거창한휴게소 광주방향 사과전망대 1층
- 위·수탁내용
 - 주요사무 : 거창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판매장 시설 유지관리
 - 시설 및 장비

시설내역	장 비 내 역
사과전망대 1층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 69.2㎡	○ 계산대 1식, 진열대 1식, 쇼케이스 1식 ○ 저장창고 1식(냉장고, 진열대), 썬크대 1식 ○ 냉난방 공조시설 및 POS 시스템

나. 위탁사무

- 시설 : 판매장 토지·건물·기계·물류기기 유지관리
- 운영 : 농산물 수집·출하·판매 등

다. 운영현황

- 취급품목 : 사과, 사과즙, 잡곡 등 20개 정도

○ 매출현황 및 시설사용료 납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200,444	92,667	68,998	78,420
사용료납부액	5,115	1,960	1,819	1,824

라. 위탁운영계획

○ 위탁자 공모

- 위탁기간 : 2023. 4. 3. ~ 2026. 4. 2.(3년간)
- 수탁대상 : 판매장 관리 및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등

마. 소요예산

○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 한국도로공사⇔거창군⇔(사)한국농업경영인거창군연합회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협약 제6조

나.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계획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I 법적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 가능

II 위탁현황

- 위탁시설 :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 69.2㎡
- 위 치 : 거창한휴게소 광주방향 거창사과전망대 1층
(거창군 가조면 도리 산181번지)
- 수탁자 : (사)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대표 : 이종희)
- 위탁기간
 - 2017. 4. 3. ~ 2020. 4. 2.(3년)(최초)
 - 2020. 4. 3. ~ 2023. 4. 2.(3년)(갱신)
- 위탁내용 :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판매장 시설 유지관리
- 시설·장비

시 설 내 역	장 비 내 역
거창사과전망대 1층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69.2㎡)	- 계산대 1식, 진열대 1식, 쇼케이스 1식 - 저장창고 1식(냉장고, 진열대), 씽크대 - 냉난방 공조시설 및 POS 시스템

III 운영현황

- 취급품목 : 사과, 사과즙, 장아찌 종류 등 20개 정도
- 매출현황 및 시설사용료 납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40,555	67,222	92,667	68,998	78,420
사용료	1,147	2,008	1,960	1,819	1,824

※ 사용료 부과 기준 : 건물 사용면적(69.2m²)×건물가액, 감면 적용

- 자체평가 : 관련조례에 의거 매년 성과평가 실시
 - 운영관리 등 3개분야 9개 지표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 양호
 - 재계약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주춤하였으나, 최근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음
 - 상품의 다양화,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어 추후 수탁자 선정 시 관련부분 반영 예정

IV 위탁운영(안)

- 위탁기간 : 2023. 4. 3. ~ 2026. 4. 2.(3년간)
- 위탁사무 :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
- 수탁대상 : 관리 및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등
- 선정방법 : 공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위탁비용 : 해당없음

VI 향후계획

- 2023. 1월~2월 : 군의회 승인 요청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23. 3월 :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
- 2023. 4월 : 위탁운영 실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 6. 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 6. 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 6. 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6. 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 6. 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 하도록 한다.(개정 2013. 6. 12)